



Q 어떤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나요?

A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각 항의 장소에서 용접·용단 작업하는 경우입니다. 다만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용접·용단 작업을 할 때 소화기구와 경보용 설비·기구를 갖췄다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(화재감시자)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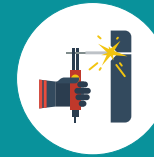
Q 화재위험작업이 여러 장소에서 수행됩니다. 모든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나요?

A 화재감시자는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. 한 명의 화재감시자 시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작업구역을 감시·관리 할 수 있다면 한 명의 감시자를 배치해도 무방하나, 상부 작업장의 불티가 개구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층 마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Q 현장 안전감시자가 화재감시 업무를 해도 괜찮은가요?

A 현장 안전감시자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해도 괜찮지만, 화재감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기타 다른 현장감시 업무를 배제하고 화재감시 업무만을 해야 합니다.

화재감시자 업무안내서



관련 근거

- ✓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
- ✓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(화재감시자)



화재감시자의 주요 업무



작업별	확인·조치사항	
작업 전	화재 조기진압 및 대피경로, 작업위험성 등에 대해 숙지	☐
	작업구역 인근 소화기 등 소화기구 배치 및 사용법 숙지	☐
	작업구역 반경 11미터 이내 인화물·가연물 제거 또는 격리 조치	☐
	불티비산방지포 등 비산방지 조치 실시	☐
	화재위험작업장 인근 화재·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의 동시 진행여부 확인	☐
작업 중	하부 개구부 등으로 불티 낙하·확산 방지	☐
	불티에 의한 화재 발생 여부 확인	☐
	불티비산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	☐
작업 후	작업 종료 후 잔여 불티에 의한 화재발생 여부 확인(최소 30분 간)	☐
	작업에 사용한 화기의 열기 제거 및 작업장 정리 확인	☐
사고 발생 시	초기단계의 화재인 경우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진압	☐
	작업장 인근 근로자의 대피 유도	☐
	화재진화 불가 시 즉시 신고 및 전파	☐
	사고 발생 사실을 관리감독자,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	☐



필수 지급·비치 용품



소화기	간이소화용구	방연마스크	확성기	휴대용 조명기구



확인하세요! 화재위험 작업 시 주요 위험요인



구분	주요 사고원인	대 책
화재	불티 비산으로 인한 가연물 점화	· 불티비산차단막 사용 · 불티비산구역 내 가연물을 제거, 주변 정리정돈 실시 ·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
	용접 시 용접 부분의 뒷면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	· 작업 전 용접부위 뒷면을 점검하여 가연물을 제거 또는 격리
폭발	토치나 호스에서 인화성가스 누설	· 가스누설이 없는 양호한 토치나 호스를 사용, 마모 등 상태 불량 시 교체 · 밀폐지역은 작업 전 반드시 수시로 가스누설 검지
	방수·단열 등 인화성 유증기 발생 위험작업 시 점화원 미제거	· 제전복·제전화 착용, 적합한 방폭 전기계장기계·기구를 사용
	드럼통·저장탱크 용접·용단 시 잔류 가스에 의한 폭발	· 내부에 가스·증기가 없는지 확인, 필요시 세정 등을 통해 내용물 제거 후 작업 실시
	역화	· 정비된 토치와 호스 사용 · 역화방지기 설치
화상	아크광 또는 불티, 과열된 금속 등에 의한 신체 화상	· 적절한 보호구(보안면, 보호복 등) 착용 · 가급적 난연성 재료의 작업복을 착용
	고순도 산소를 먼지 제거용으로 인체에 사용하던 중 작업복에 잔류 불티 등에 의하여 화상	· 고순도 산소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· 인체사용을 금하고 소화기를 비치

